

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어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4. 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3.2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3.26.

다. 상정일자 :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4.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】

가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료(사용료)를 한시적으로 감면(할인)하고자 조례 일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10% 감면(할인) 규정 마련하되 201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적용과 중복감면을 제한함.

〈자치법규 개정 현황 : 조례 9건(8개 부서)〉

연번	자치법규 명	개정 내용	비고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연회비의 100분의 10 감액 -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	조례안 제1조
2	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100분의 10 할인	조례안 제2조
3	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, 수강료의 100분의 10 감액	조례안 제3조
4	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액 -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	조례안 제4조
5	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0분의 10 감액 -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	조례안 제5조
6	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이용료의 100분의 10감액	조례안 제6조
7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10 감액	조례안 제7조
8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할인	조례안 제8조
9	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개인사용료,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 감액 -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	조례안 제9조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조희옥)

○ 본 조례안은

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율을 높이고자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등을 한시적으로 할인하고자 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-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2018년 12월 20부터 서울시, 경남,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
- 소상공인 간편결제(이하 “제로페이”로 함)는 최근 소비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월 평균 매출액 1억 원일 경우 매출액 중 80%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비중 중 10%를 제로페이로 대체 결제할 경우 연간 153만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있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한편,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%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.

〈표1〉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비교

구 분	연매출액	구분			
		3억 원 이하	3~5억 원	5~10억 원	10~30억 원
신 용		0.8%	1.3%	1.4%	1.6%
체 크		0.5%	1.0%	1.1%	1.3%
제로페이		8억 원 이하 0%		12억 원 이하 0.3%	12억 원초과 0.5%

*출처: 금융위원회

〈표2〉 카드수수료·제로페이 매출세액별 공제 혜택

월 평균매출액	연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¹⁾	연간 제로페이 대체 수수료 인하 혜택 ²⁾	총 혜택 금액
2,000만 원	86.4만 원	15.4만 원	101.8만 원
4,000만 원	276.5만 원	49.9만 원	326.4만 원
6,000만 원	362.9만 원	80.6만 원	443.5만 원
8,000만 원	483.8만 원	107.5만 원	591.3만 원
10,000만 원	432.0만 원	153.6만 원	585.6만 원

*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- 소상공인·자영업 대책 혜택 계산기를 이용하여 단순 매출액만 기준으로 모의 계산한 결과임

- 1) 전체 매출액 중 80%를 신용카드 사용 시 혜택
- 2) 신용카드 결제비중 중 10% 제로페이로 대체 시 혜택

〈표3〉 제로페이·신용카드 소득공제 비교

총급여	소득세율 ³⁾	사용액	환급액 ⁴⁾				차액
			신용카드 공제율	환급액	제로페이 공제율	환급액	
3,000만 원	15%	1,500만 원	15%	약 17만 원	40%	45만 원	약 28만 원
5,000만 원	15%	2,500만 원		약 28만 원		75만 원	약 47만 원
7,000만 원	24%	3,500만 원		63만 원		168만 원	약 105만 원

*출처: www.zeropay.or.kr

- 또한 지속적인 홍보로 2월 제로페이 사용실적이 1월 대비 87.5% 증가 하였으며 가맹점 수 또한 증가 추세임.

〈표4〉 월별 제로페이 사용실적

월별	1월	2월	비고
결제대금	2억 8,272만 원	5억 3,000만 원	2월 결제대금은 1월 대비 87.5% 증가

*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자료(전국 합산 실적)

〈표5〉 기간별 제로페이 가맹점수

기간별	1월 누계	2월 누계	3월 누계
가맹점수	46,572 개	67,535개	124,455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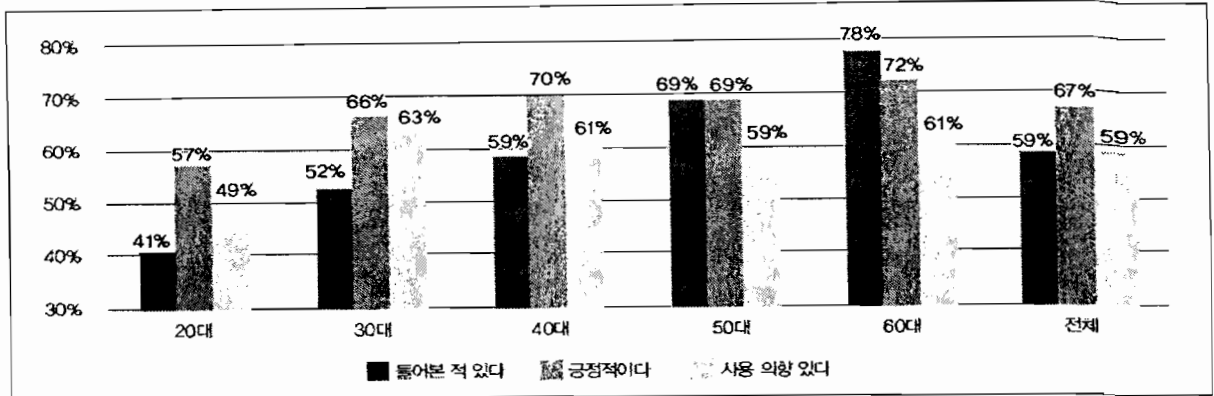
*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자료(전국 합산 실적)

- 최근 한국외식사업연구원에서 서울시 거주자 600명을 대상으로 제로페이에 대한 인지율, 긍정률, 사용 의향률을 설문조사한 결과
 → 응답자 중 제로페이에 대해 59%가 '들어본적이 있다'고 답했으며,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고 '제로페이 제도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' 라는 질문에 67%가 '긍정적'으로 여기며, 제로페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은 있지만 실제 사용할 의향은 다소 낮음으로 확인되었음.

3) 소득세율 : 과표소득에 따라 6~38% 적용

4) 환급액 : 공제금액(사용액-세전연봉의 25%)×공제율)×과표소득 최종세율

〈표6〉 연령별 제로페이 인지도, 긍정률, 사용 의향률



*출처: 한국외식산업연구원(2019. 1. 14. ~ 1. 25. 까지 서울시 거주자 6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)

- 이는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이고 소상공인,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, 가맹점 등록은 증가추세인 반면 시행 초반으로 서울의 자영업자 수 대비 등록 수는 저조하며, 결제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과 소상공인,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가 갖는 장점이 그동안 홍보된 만큼 크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 실제 사용할 의향이 낮다고 볼 수 있음.
- 따라서,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결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, 마포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로페이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이며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한 보전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나, 사용료 등의 지원이 구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,
- 2019년도 예산기준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38.93%로 재정자립이 어려워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대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